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5.1) 및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감사·(민원)조사·고객만족·환경순찰 업무 등으로 한다.(안 제3조)
- 나. “행정관리국에 총무과·홍보과·자치행정과·문화체육과·전산정보과·민원여권과를 둔다”로 하고, “다만,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”를 삭제 하며, 부칙에 존속기한을 2008.12.31까지로 한다(안 제4조)
 - 소관사무중 “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고 “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”과 “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한다.
- 다. “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·지역경제과·재무과·세무1과·세무2과를 둔다.”로 한다.(안 제5조)
 - 소관사무중 “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한다.
- 라. “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·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·교육지원과·청소행정과·환경과를 둔다.”로 한다.(안 제6조)
 - 소관사무중 “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“공중화장실의 설치·시설유지 및 관리(공원내 공중화장실 제외)에 관한 사항”으로 변경하고, “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며, 아래사무를 신설한다.

-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-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
- 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
-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-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-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-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마. “도시관리국에 주택과 · 도시계획과 · 건축과 · 도시디자인과 · 지적
과 · 공원녹지과를 둔다.”로 한다.(안 제7조)

- 소관사무중 아래 사무를 삭제한다.
 -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 -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
 - 물 관리에 관한 사항
 -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
 -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 -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
 -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 -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바. 보건소장의 업무에 “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
생 · 공중위생 · 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”를 “지역보건법 제
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 · 공중위생 · 위생업소 감시업
무 ·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· 단속 등을 수
행한다”로 변경한다.(안 제11조)

사.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며, 부칙에 한시기구
존속기한을 2010.12.31까지로 한다.(안 제11조의2)

아. 기구재설계에 따른 관련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개정방식으
로 개정함

3. 개정근거

- 가. 지방자치법(2008.2.29 법률 제8852호) 제11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(2008.7.3 대통령령 제20900호) 제5조 내지 제8조, 제13조 내지 제15조
- 다.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5.1)

4. 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8. 8. 11 ~ 8. 18)결과, 특이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08.8.19)
- 다. 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.